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12. 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94호로 202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 책무성 강화 및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아동학대 조사체계의 공공 중심 개편에 따른 구의 역할 확대
및 조문체계 정비
- 나. 조례명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다. 별도의 정의 규정이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개정(안 제2조)
- 라. 구청장 책무에 따른 규정 구체화 및 정비(안 제4조제2항)

마.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해당 내용 삭제(안 제5조제1~3항)

바. 조문 체계화 및 정비(안 제7조)

사.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올바른 띄어쓰기, 명칭의 통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리 등 자구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3)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다. 입법예고(2020. 10. 22. ~ 11. 8. / 17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 책무성 강화 및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2조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및 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구청장 책무에 따른 규정을 구체화 및 정비하였음.
 - 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조문을 체계화 및 정비하였으며
 - 그 밖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구의 책무성 강화 및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지침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 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

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

- 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

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